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7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윤준병 · 이병진 · 한병도
안호영 · 허 영 · 안도걸
이춘석 · 정태호 · 박희승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

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를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도지사”를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로, “둔다”를 “두고,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로,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2.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
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감-----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
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
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
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
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
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
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도지사 또는 도
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
분석·검증하고 제121조에 따
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
(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
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
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
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
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
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을 위촉한다.

<신설>

<신설>

⑤ ~ ⑦ (생략)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두고,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
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을-----
-----.

1.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
전체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
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2.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
전체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
서, 2명은 도지사가 각각 추
천하는 사람

⑤ ~ ⑦ (현행과 같음)